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제 확대 시행

탄력세율 적용등 3개항 추가 페널티제도는 법개정뒤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인센티브제가 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

행정자치부는 4일 공무원정원감축, 지방세징수율, 경상경비절감, 일용인부절감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재정인센티브 제도에 탄력세율 적용,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지방청사관리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11개 항목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인센티브제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조금인 교부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로, 재정운영을 잘못한 지자체에 교부금을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제도와 함께 당초 오는 3월 이후 확대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페널티제도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도만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최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공원 등의 입·출입 요금을 현실화해 수입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 ‘지방청사관리’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청사의 건립·운영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됐다.

또 ‘탄력세율 적용’은 지자체가 지방세율을 지

방조례에 따라 $\pm 5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눈치를 보느라 올리지 못하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대한매일, 2001. 1. 5(금)]

교통봉사자 과실 사고 대법원 지자체에 배상책임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교통 할아버지’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는 25일 “교통 할아버지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화재해상보험이 서울○○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구청은 1,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화재해상보험은 95년 5월 ○○구청이 교통 할아버지로 위촉한 김모씨가 교통 정리를 하다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잘못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소송을 냈다.

[대한매일, 2001. 1. 26(금)]